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보도자료

보도

2018. 8. 20 (월) 16:00부터

배포

2018. 8. 17(금)

책임자

사회안전망연구실  
강성호 실장(3775-9033)

작성자

강성호 연구위원(3775-9033)

홍보담당

최원 선임연구원(3775-9057)

총 6매

## 보험연구원,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심포지엄 개최

### “여성의 노후빈곤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금정책 필요”

-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8월 20일(월) 오후 4시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함
  - [행사 취지] 급속한 고령화로 여성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여성관련 공사적 연금개혁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함
  -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은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연금정책은 노동시장 보완기능이 미흡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이 약하다고 평가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금정책을 검토한 후,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선진국 수준의 공적연금 제도 개선 및 사적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특히, 노동시장의 문제, 가족 구성의 변화, 공적연금의 재정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적연금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함. 첫째,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 허용을 통해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확대할 것, 둘째,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과 부부연생연금을 종신연금형태로 제도화할 것, 셋째,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

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대  
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는 세계 최고의 고령 여성시대를 맞이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새  
로운 패러다임의 연금정책을 구상할 때임을 강조함

##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보험연구원 강성호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

### 우리나라 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고령 독신 여성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의 노후빈곤이 우려됨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특히 예상보다 빠르게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도달기간은 17년, 초고령사회 도달기간은 9년으로 예상됨
    - 과거 고령사회 도달은 2018년으로 예상되었으나 도달기간은 1년 앞당겨짐
    - \* 주요국 고령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은 각각 일본(24년, 12년), 독일(40년, 37년), 미국(73년, 21년)
- 고령화로 인해 노인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초고령 독신 여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40세 이후 여성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노인 여성 1인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현상은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의 성별 기대여명 격차가 더 크다는 점에서 노인 여성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됨
  - 여성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사별 혹은 이혼에 있으며, 노후 준비가 덜된 여성은 빈곤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경제활동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고용률, 경활률, 소득수준 등이 낮고, 노후준비 수단인 연금소득 또한 적어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여성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발생하여 고용률, 경활률이 특정 연령(30대)에서 낮은 경향이 있음
  - 또한 여성은 저소득 및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어 임금소득 기준이 남성의 64.1% 수준으로 낮음
    -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7.2%로 OECD 평균인 14.3%보다 훨씬 높음
    -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여성의 노동시간이 비공식업무 및 비급여 노동시간 등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임
  - 여성(30.2%)의 노후준비는 남성(42.4%)보다 낮아 노인 빈곤율은 높은 편임

- 노후준비의 주요 수단인 연금수급 상황을 보면, 남성은 연금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나 여성은 저연금에 편중됨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연금정책은 노동시장 보완기능이 미흡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이 약함**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을 통해 여성관련 연금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역할은 미미함
  - 출산크레딧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경력단절에 대해 일정기간 만큼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음
  - 유족연금, 분할연금을 통해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도 있음
- 사적연금은 판례를 통해 이혼 배우자에 대해 연금을 분할해 주는 사례가 있을 뿐 제도화 되지는 못함
  - 퇴직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판례를 통해 분할연금이 인정된 사례가 있음(퇴직연금의 판례는 미존재)

**선진국의 여성관련 연금정책은 공적연금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선진국의 여성관련 연금제도는 배우자연금(spouse pension or widows' pension),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분할연금, 육아·출산 크레딧 등이 있음
  - 유족연금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혼인기간 조건이 짧고,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음
  - 분할연금의 경우 동거 및 혼인관계 유지 시에도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등 광범위한 여성의 수급권을 인정함
- 선진국의 여성관련 사적연금제도에는 배우자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으며,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 출산지원금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전업주부), 저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배우자연금 계좌를 사적연금제도에서 운영하고 있음
    - 근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구주)가 동 계좌에 보험료를 대납(미국 Spousal IRA,

캐나다 Spousal RRSPs, 호주 Spouse Contributions)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 한도액: 미국 \$5,500, 캐나다는 급여의 18%(또는 \$26,230 중 작은 금액), 호주는 \$3,000

-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은 이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간주함
- 영국과 호주의 경우 사적연금에서 형성된 유족연금에 대해 비과세함
  - 영국은 급여수령형태(연금 혹은 일시금)와 관계없이 75세 이전 사망 시 무조건 비과세함
  - 호주의 유족일시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은 유족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됨
- 칠레는 출산 또는 입양 시 여성의 연금계좌에 출산지원금을 납입해주며 65세 이후 인출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을 통한 여성 연금수급권을 확대 보장함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선진국 수준의 공적연금 제도 개선 및 사적연금 확대가 필요함**

- 연금제도의 기여성 원칙을 고려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입에 있어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요구됨
  -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이 발생을 보완하되 남성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가사 참여 확대 정책이 필요함
  - 재정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활용하여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 보상하고, 사내 복지기금 등을 활용하여 여성의 사적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여성 소득보장 정책 수준까지는 맞출 필요
  - 선진국은 지속적인 여성관련 공적연금 개선에도 여전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은 상황임
  - 이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 및 성별 격차를 고려할 경우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고질적 문제인 재정문제는 향후 선진국의 상황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과의 협조적 대응이 요구됨
- 노동시장의 문제, 가족구성의 변화, 공적연금의 재정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의 경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적연금 정책 개선이 필요함

-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가입 범위 확대를 통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확대할 필요 있음
- 미국이나 독일처럼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이 제도화되고 부부연생연금으로 수급권을 확보하되, 수급형태를 종신연금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도록 함
-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가입유인 제고를 통해 여성 연금수급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관련 재원은 퇴직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줄여 그 차액에 해당되는 조세수입원으로 충당한다면 재정중립성도 고려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여성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정년 의무화 연령인 60세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동 취지는 여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여성에 대해 노후준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